

저축성 보험에 대한 조세정책과 개선방안

김태완*, 정석용**, 황규진***
강릉원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동양미래대학교 전산정보학부 교수**,
동양미래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Improvement and Tax Policy for the Savings-Type Insurance

Tae-Wan Kim*, Suk-Yong Jung**, Kyu-Jin Hwang***

Dept. of Accounting, Gangneung Wonju National University*

Dept. of School of Computer and Information, Dong Yang Mirae University**

Dept. of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Dong Yang Mirae University***

요 약 보험은 위험보장이라는 본래의 기능으로 세법에서 다른 금융상품보다 우대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의 보험상품은 위험보장 뿐만 아니라 투자기능 및 저축기능이 결합된 다양한 방식으로 출시되고 있다. 더욱이 보험사의 판매 방식이 절세전략, 조세회피 등과 관련된 컨설팅 등을 포함하고 있어 저축성 보험차익의 비과세와 관련된 조세정책에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고액자산가의 조세회피방지와 타금융상품 간의 형평성 등을 위하여 2013년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를 개정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축성 보험차익에 대한 조세정책의 타당성을 2013년에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 저축성 보험, 생명보험, 변액연금보험, 변액유니버설보험, 절세전략.

Abstract Insurance has been preferential treatment than other financial products for risk ensure as a original function in tax law. However, the recent insurance products is being released in a variety of ways combined with investment and savings, as well as risk ensure. In addition, as the insurer's sales approach including to tax avoidance, tax saving strategies, tax policy associated with the tax-free savings-type insurance has been criticized. The government amended Article 2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2013 in order to prevent tax avoidance and equity among other financial instruments, but there are still many problems exist. this study looks for the validity of the tax policies of savings-type insurance in terms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s amended in 2013, and derived for ways to improve.

Key Words : Savings-Type Insurance, Life Insurance, Variable Annuity, Variable Universal Life Insurance, Tax Saving Strategies.

Received 22 May 2013, Revised 20 June 2013

Accepted 20 July 2013

Corresponding Author: Tae-Wan Kim(Gangneung Wonju National University)

Email: kimtw@gwnu.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보험이란 동일한 우발적 사고발생이라는 위험 아래에 있는 다수의 경제주체가 사고로 인하여 생기는 경제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대수의 법칙 등 일정한 과학적 기초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미래 출연하여 공동재산을 비축하고 현실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공동재산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급여를 하는 제도이다(대법원 199.06.30. 선고, 89도2537 판결). 이러한 보험은 위험보장이라는 보험의 본래적 기능과 더불어 사회보장제도의 강화, 저축유도 등 정책적 차원에서 장려되었으며, 조세법에서도 이를 수용하여 소득공제, 비과세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10년 이상의 장기보장성 보험차익의 비과세는 보험사의 새로운 보험상품개발, 보험가입자의 절세전략 등과 함께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2013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서 저축성 보험차익의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였으나 금번 개정에서도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저축성 보험이 가지고 있는 과세상의 문제점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저축성 보험차익이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보험료를 매월 납입하는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인 경우와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납입보험료 합계액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그리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종신휘 연금보험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저축성 보험의 계약변경으로 인한 조세회피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명의변경, 보험료 증액, 보장성에서 저축성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변경일을 해당 보험계약의 최초 납입일로 간주하여 저축성 보험차익의 비과세요건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현재 출시되고 있는 보험상품은 보장기능 뿐만 아니라 투자기능, 저축기능이 포함된 복합금융상품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보험의 판매방식도 절세전략과 자산설계라는 통합금융컨설팅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저축성 보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축성 보험에 대한 세법규정과 2013년 개정된 소득세법을 중심으로 저축성 보험차익의 비과세 요건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저축성 보험차익의 과세규정

2.1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

보험은 상법상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구분되며, 인보험은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으로 분류된다. 생명보험은 개인의 사망, 상해, 손해 등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으로 사망보험,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등의 형태로 존재한다. 생명보험은 보험계약기간 이내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망보험금을 받는 사망보험과 일정기간 이후까지 생존하는 경우 만기보험금을 받는 생존보험, 그리고 사망보험과 생존보험의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생사혼합보험으로 존재한다. 한편, 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하면 보험상품에 대하여 규제목적상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으로 분류하여 취급하고 있다[5].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의 방카슈랑스 도입, 2008년의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교차판매 허용 등 보험회사의 영업환경 변화와 더불어 보험상품에서도 변액보험, 변액연금보험, 유니버설보험 등 투자 및 저축의 기능이 추가된 보험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상 보험은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으로 구분하여 과세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생명보험 중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은 보험가입의 주목적에 따라 분류된다[2].

보장성 보험은 위험보장이라는 보험 본래의 기능에 중점을 둔 보험으로 피보험자가 만기까지 생존할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으로 정기보험, 종신휘, 장기간병보험, 변액종신휘, 보장형 변액유니버설보험 등이 있다. 보장성 보험의 경우 만기까지 생존할 경우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과 만기까지 생존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만기환급형 보험으로 구분된다. 보장성 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국민들의 사회보장강화 등의 보험기능을 고려하여 일정액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저축성 보험은 피보험자가 만기까지 생존할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으로 저축보험, 연금저축, 교육보험, 일반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저축형 유니버설보험, 저축형 변액유니버설보험 등이 있다. 저축성 보험은 생명보험의 위험보장 기능보다 저축기능 또는 투자기능을 가미한 상품으로 노후대비, 목돈마련 등의 목적으로 이용된다. 저축성 보험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득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절세상품으로도 인기가 많다.

2.2 저축성 보험차익 과세의 연혁

소득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저축성 보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사회보장제도의 강화, 장기저축유도, 보험산업발전 등의 목적을 위하여 조세정책적인 측면에서 장기저축성 보험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장기저축성 보험의 범위는 그동안 조금씩 조정되어 왔는데, 이는 저축성 보험차익이 조세부과의 원론적 차원이 아닌 정부의 조세정책과 금융시장의 상황에 따라 변경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저축성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는 1990년까지 전 저축성 보험상품에 적용되었으나 1991년 1월부터는 3년 이상 유지된 계약, 그리고 1994년 1월부터는 5년 이상 유지된 계약으로 변경되었다가 1996년 5월부터는 7년 이상 유지된 계약으로 재변경되었다. 그 이후에도 1998년부터는 다시 5년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금융상품 간 세제상 불평등 완화 등을 위하여 2001년에는 7년으로 변경되었으며, 2004년부터는 10년으로 변경되고 해당 기간 동안 원금의 인출이 없을 것 등 저축성 보험의 과세제외 요건을 강화하여 왔다. 특히, 2013년에는 신종보험상품의 출시, 고액자산가의 조세회피 등 저축성 보험차익 비과세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문제점이 제기됨으로 인하여 대폭 수정이 가해졌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을 중심으로 저축성 보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다.

2.3 저축성 보험차익의 계산

저축성 보험계약은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계약 또는 손해보험계약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신용협동조합중앙회·새마을금고연합회에 의하여 영위하는 생명공제계약 또는 손해공제계약을 말한다(소득령 25 ②).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에 받는 보험금·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당해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를 뺀 금액을 말한다(소득령 25 ①). 여기서 납입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 금액

으로 한다. 보험계약자가 보험 가입시 보험료의 전액 선납으로 인하여 보험료의 할인을 받은 경우 선납할인액을 제외하고 중도해지 시의 기간미경과 선납액을 포함한다(서면 1팁-224, 2006.02.20). 또한 보험계약기간 중에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은 배당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은 이를 납입보험료에서 차감하되, 그 배당금 등으로 납입할 보험료를 상계한 경우에는 배당금 등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본다(소득령 25 ④).

2.4 저축성 보험차익의 비과세 대상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서는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으로 구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3년 개정 전의 규정은 과세대상 저축성 보험차익에 대하여 열거하고 일정한 범위 내의 보험차익을 과세하였다면, 금번 개정에서는 저축성 보험차익을 원칙적으로 과세하고 다음과 같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비과세로 규정하는 형식으로 바뀌었다.

2.4.1 일반 저축성 보험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2억 원 이하인 저축성 보험계약으로서 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보험은 이자소득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소득령 25 ① (1)). 다만, 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확정된 기간이란 연금의 지급기간이 일정한 기간(5년, 10년, 20년 등)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상속형 연금보험이 이에 속한다. 상속형 연금보험은 종신형 연금보험과 달리 사망시 고액의 보험금이 상속되어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자 1명당 납입보험료 2억원의 한도를 적용받게 된다. 여기서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2억 원 이하인지의 여부는 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저축성 보험의 보험료 합계액을 말하지만,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과 종신형 연금보험은 제외된다. 따라서 즉시연금의 경우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2.4.2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계약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자소득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소득령 25 ① (2)).

- ① 최초 납입일로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 ② 최초 납입일로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계약일 것
- ③ 최초 납입일로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로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를 포함함)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의 경우에도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최소한 5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는 1년, 2년, 3년 등 짧은 기간 동안 고액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보험기간을 10년 이상 유지하여 비과세 혜택을 얻으려는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또한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의 납입보험료는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하되, 계약자의 납입한도는 없다. 이는 보험계약 이후 추가납입을 통한 거액을 예치한 이후 10년 보험기간을 유지함으로써 비과세 혜택을 얻으려는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료 증액의 경우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로 제한하였다.

2.4.3 종신형 연금보험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 정기적으로 일정한 연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으로 노후의 경제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자소득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소득령 25 ① (3)).

- ①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계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보험금·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계약일 것
- ②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수익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계약일 것
- ③ 사망시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 ④ 최초 연금지급개시 이후 사망일 전에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없을 것

종신형 연금보험은 계약자가 사망시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되기 때문에 고액자산자의 조세회피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종신형 연금보험에서는 계약자 1명당 납입보험료 2억원의 한도를 적용받지 아니한다. 여기서 사망시점은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 이내의 보증기간이 설정된 경우로서 계약자가 해당 보증기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는 해당 보증기간의 종료시점을 말한다.

2.4.4 보장성 보험

개인이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험금이 보험료 납입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소득령 제25 ① (4)). 저축성 보험의 경우에도 사망, 상해, 질병, 부상, 기타 신체상의 상해 등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험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2.5 저축성 보험의 계약변경

저축성 보험 중 일반 저축성 보험 및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 명의변경, 보장성 보험에서 저축성 보험으로 변경, 기본보험료의 1배를 초과하는 증액과 같은 보험계약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해당 보험계약의 최초 납입일로 한다(소득령 25 ③). 이와 같은 사유에 의한 보험계약의 변경은 그 변경일로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해당 보험차익이 비과세된다. 해당 규정은 저축성 보험 계약의 내용변경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조세회피 사례가 발생하고 금융상품간의 조세형평성이 침해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3년 법률개정을 통하여 이를 명확히 하였다.

2.5.1 계약자 명의변경

저축성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 명의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해당 보험계약의 최초 납입일로 한다. 세법 개정 전에는 저축성 보험의 명의변경시 최초 보험료 납입일을 보험계약의 기산일로 하여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인 10년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따라 개인간 또는 법인·개인간 명의변경을 통해 저축성 보험 비과세혜택이 불합리하게 타인에게 이전되는 결과 초래되는 문제점이 있었다⁴⁾. 가령, 법인이 저축성 보험계약을 하고 대표자 등 임원으로 보험계약자를 변경하거나 부모가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이후 그 자녀로 보험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저축성 보험차익이 전액 비과세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원천세과-441(2010.05.28)). 따라서 보험계약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각 계약자별로 판단하도록 그 변경일을 해당 보험계약의 최초 납입일로 하여 10년 이상의 보험계약기간을 강화하였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사망에 의한 변경은 불가피한 사유이기 때문에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2.5.2 보장성 보험의 저축성 보험으로 변경

보장성 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일을 해당 보험계약의 최초 납입일로 한다. 당초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일정시점이 경과한 이후 저축성 보험으로 변경하는 경우 종전 규정에 의하면 당초의 보장성 보험의 최초보험료 납입일을 보험계약의 기산일로 하여 보험차익의 비과세요건인 10년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따라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혜택이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되었다. 따라서 보장성 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변경일을 해당 보험계약의 최초 납입일로 하여 10년 이상의 보험계약기간을 강화하였다. 다만, 보장성 보험에서 저축성 보험으로 전환되는 금액이 2억 원 이하이고 변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으며, 보장성 보험을 비과세되는 종신행 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비과세가 적용된다.

2.5.3 기본보험료의 증액

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를 초과하여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보험계약의 변경인 경우에도 그 변경일을 해당 보험계약의 최초 납입일로 한다. 2013년 개정 이전에는 일정액의 저축성 보험으로 계약한 이후 추가납입을 통하여 보험료 납입금액을 상향조정하여도 해당 저축성 보험이 10년 이상 장기일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많은 저축성 보험의 계약자는 만기시점에서 보험료를 증액하여 이자소득을 회피하고자 하였

다.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지 위하여 금번 세법 개정에서 기본보험료의 1배를 초과하여 증액하는 경우 전체계약분에 대하여 비과세하도록 되었다.

3. 저축성 보험차익의 개선방안

3.1 보험만기 이후 가산이자 과세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에 받는 보험금 등에서 납입보험료 등을 차감하여 계산된다. 저축성 보험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저축성 보험과 관련된 차익은 제한 없이 비과세 된다. 특히, 저축성 보험의 만기 후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가산이자율에 의한 가산이자의 경우도 과세에서 제외되는 보험차익에 포함된다(법인 46013-507, 2001.03.08.). 그러나 저축성 보험의 만기 이후 가산이자를 비과세하는 것은 다른 금융상품과의 조세중립성을 저해하고 조세의 일관성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다.

저축성 보험차익의 만기일 이후 가산이자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근거로 보험약관에서 만기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가산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축성 보험차익을 비과세하는 이유가 위험보장이라는 보험의 고유기능과 저축지원 등에 대한 조세정책적인 배려에 있다면, 만기가 경과된 이후에는 조세지원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의 만기 이후에는 보험특성이 소멸되고 일반예금과 같이 이자만이 가산되는 것이므로 일반예금과 다를 바가 없다. 또한 생명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지연손해금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저축성 보험차익의 만기 이후 가산이자는 과세되는 것이 타당하다.

3.2 즉시연금과 중도인출의 과세

즉시연금이란 목돈을 일시에 납입한 이후 다음 달부터 매월 일정액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보험상품으로서 저축성 보험에 해당한다. 즉시연금은 고령사회의 대비,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였으나 높은 이자율 보장과 함께 이자소득세

비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외 등 다양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면서 고액자산가들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2013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의하여 계약자 1명당 납입보험료 합계액이 2억 원 이하로서 보험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 보험차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종신형 연금보험이나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의 경우에는 계약자 1명당 납입보험료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고액자산가의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 즉, 저축성 보험을 활용한 조세전략은 이자소득세의 비과세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저축성 보험에서 납입보험료의 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종신형 연금보험이나 월 적립식 장기 저축성 보험을 결합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할 수 없는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하게 된다.

한편, 최초 보험료 납입일 이후 10년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만 보험차익을 과세함에 따라 중도인출의 경우는 과세할 수 없게 되었다. 당초 2012년 8월 8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하면 계약기간은 10년 이상이나 10년이 경과되기 전에 납입보험료 또는 그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도 인출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포함하되, 연간 200만원 이하의 중도인출과 사망·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 인출하는 경우는 예외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중도 인출의 경우에는 고액자산가들이 이용하기 보다는 주로 서민층에서 이용된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쟁점은 이자소득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저축성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 여부로 즉시연금과 같이 일시에 고액을 납입하고 다음 달부터 중도 인출하는 것은 예금 등과 그 성격이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이자소득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타금융소득 간의 조세중립성이 저해되고, 이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가 발생되어 조세의 형평성도 침해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액자산가의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자 1명당 납입보험료 합계액이 2억 원 이하인 규정에서 제외되는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과 종신형 연금보험의 금액을 포함하여 비과세를 판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중도인출의 경우에도 일정액의 한도 이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3.3 저축성 보험상품에 대한 소득구분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저축성 보험은 저축보험,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변액유니버설보험 등이 있다. 전통적 형태의 저축성 보험은 확정 이자를 지급하는 강제성 저축의 의미를 띠는 것이 대부분이며, 최근에는 실제 금리가 연동하거나 투자실적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 보험 등이 개발되고 있다[1].

특히, 변액보험은 납입한 보험료 중 사업비와 보장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모아 펀드를 구성한 후 주식 또는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익을 배분하는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으로 자산운용회사의 수익증권 또는 뮤추얼펀드와 유사한 자산운용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변액유니버설보험은 간접투자상품에 대한 실적배당과 입출금기능, 보험의 보장기능 등이 있는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금과 유사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품은 위험보장이라는 본래의 보험기능 뿐만 아니라 투자 또는 저축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상품으로 동일한 경제적 실체거래에 대해 일관성 없는 과세처리를 규정한 세법상 허점을 남용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개발되었다고 할 수 있다[3]. 또한 재무설계 측면에서도 위험 대비 목적의 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한 순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투자 및 저축의 목적을 위해서는 변액보험 또는 변액유니버설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변액보험과 변액유니버설보험의 경우 그 형식은 보험에 해당하지만 경제적 실질은 예금 등과 다를 바가 없다.

변액보험 또는 변액유니버설보험 등 신종보험상품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10년 이상의 저축성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규정 때문에 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보험·예금·펀드 등이 결합된 복합금융상품 등이 출시되고 있어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규정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과생상품 등 복합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는 유형별 포괄주의방식이 도입되어 그 경제적 실질이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과생상품이 결합되어 있는 신종 금융상품에 대하여 과세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투자성이 있는 예금과 변액보험 등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된다. 따라서 변액보험 등은 그 실질에 따라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부과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의 이자소득

을 발생시키는 거래·행위와 과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해당 과생상품의 거래·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과세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3.4 다른 금융상품과의 조세형평성

저축성 보험은 예금, 펀드 등의 다른 금융상품에 비하여 절세의 범위와 폭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다른 금융상품과의 과세형평성이 침해되고 조세의 중립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비과세는 신탁업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뿐이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비과세 이자소득은 금액과 기간, 가입조건 등에 일정한 규제가 있다. 가령, 생계형 저축의 경우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이 3,00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2014년까지 가입이 가능하다(조특법 88의2). 또한 재형저축의 경우 급여소득이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7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분기별 300만원 이내에서 2015년까지 가입하여야 한다(조특법 91의14). 그러나 저축성 보험의 경우에는 계약자 1인당 2억 원으로 10년간 유지하는 보험으로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으며,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과 종신형 연금보험을 고려하면 금액과 기간의 제한이 매우 유연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을 감안한다면 저축성 보험을 이용한 조세회피는 한도 없이 인정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연금저축의 소득공제가 연간 400만원이며,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이 하향 조정된 점 등을 고려한다면 저축성 보험차익의 비과세는 지나치게 확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저축성 보험에서도 가입대상과 금액, 기간제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4. 결론

보험은 위험보장이라는 본래의 기능으로 세법에서 다른 금융상품보다 우대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의 보험상품은 위험보장 뿐만 아니라 투자기능 및 저축기능이 결합된 다양한 상품으로 출시되고 있다. 더욱이 보험사의 판매방식이 조세회피 등과 맞물려 생명보험과 관련된 조

세정책에 비판이 제기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특히 저축성 보험차익은 해당 계약을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과세에서 제외되어 조세회피와 관련된 문제점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2013년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를 개정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지만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축성 보험차익에 대한 조세정책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저축성 보험차익의 만기 이후의 가산이자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축성 보험차익의 비과세는 위험보장, 저축지원 등에 대한 조세정책적인 배려로서 보험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이러한 이유가 소멸되며, 생명보험금의 지연손해금도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저축성 보험차익의 만기이후 가산이자자는 과세되어야 한다.

둘째, 2013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저축성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계약자 1명당 납입보험료 합계액이 2억 원 이하일 것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과 종신형 연금보험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되지만 납입금액의 한도가 없기 때문에 계약자 1명당 납입보험료의 제한규정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따라서 계약자 1명당 납입보험료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규정에서 제외되는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과 종신형 연금보험의 금액을 포함하여 비과세를 판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저축성 보험에는 변액보험, 변액유니버설보험 등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상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된다. 이러한 변액보험 등과 관련된 이자소득은 과생상품의 거래 및 행위로부터의 이익으로 과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보험상품이 다양한 기능이 결합되어 유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축성 또는 보장성의 구분만으로 이에 대한 과세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의 원천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2013년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의 개정으로 저축성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할 때 저축성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에는 가입대상 등의 규제가 전혀 없다. 또한 금액제한 역시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과 종신형 연금보험에 의하여 제한에 의미가 상실될 수 있고, 기간제한 역시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에 의하여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저축성 보험에서도 가입대상과 금액, 기간제한이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성이 있다.

REFERENCES

- [1] Eung Young Baek, Soon Hee Jeong, Determinants of the Demand for Cash-Value Life Insurance ,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 23, No. 3, pp. 218-219, 2005.
- [2] Young Chul Sohn, Jong Pil Kim, A Study on Taxation Issue of Insurance Products, Kookmin Law Review, Vol. 24, No. 3, pp. 193-194, 2012.
- [3] Young Hoon Roh, Policy Response to Tax Avoidance Transactions through DFI in Korea,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pp. 12-13, 2005.
- [4]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Tax Reform Question Answer Releases, pp. 63-64, 2012.
- [5] Korea Life Insurance Association, Understanding and sales of variable life insurance, pp. 105-106, 2012.

김 태 완(Kim, Tae Wan)



- 2002년 8월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사)
- 2007년 8월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석사)
- 2012년 8월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세무학박사)
- 2009년 3월 ~ 현재 : 강릉원주대학교 회계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보험세제, 주식평가, 물납
· E-Mail : kimtw@gwnu.ac.kr

정 석 용(Jung, Suk Yong)



- 1987년 2월 : 서울대학교 (계산통계학사)
- 1993년 8월 : 한국과학기술원 (정보 및 통신공학 석사)
- 2004년 2월 : 아주대학교 (컴퓨터공학박사)
- 1996년 3월 ~ 현재 : 동양미래대학교 전산정보학부 교수

· 관심분야 : 정보통신, 컴퓨터공학
· E-Mail : syjung@dongyang.ac.kr

황 규 진(Hwang, Kyu Jin)



- 1989년 2월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사)
- 1991년 2월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석사)
- 2005년 8월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박사)
- 1998년 3월 ~ 현재 : 동양미래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관심분야 : 연결재무제표론, 정부회계정책
· E-Mail : qhwang@dongyang.ac.kr